

# 2020년 귀속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

▶ **제출방법** :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(2021년 1월 15일(금) 오픈예정)  
 (경로>홈택스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>조회/발급 > 연말정산> 연말정산간소화)

▶ **제출기한** : 2021년 1월 28일(목요일) 오후 6시 까지  
 (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'미제출'로 간주하여 연말정산신고에서 기본공제만 적용)

**연말정산간소화**

병원·학교·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 
 개인,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주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.

**연말정산 쉼표**

- [근로자] 간소화 자료 조회 : 매일 06:00~24:00
- [영수증 발급기관] 공제자료 제출 : 1월1일~7일 06:00~22:00
- [기부금 단체] 자료제출 신청 : 11월 중 06:00~24:00

**이용절차 안내**

- 01 공인인증서 로그인 **로그인**  
\*은행, 우체국 등에서 발급
- 02 자료제공동의 신청 **신청**
- 0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**조회**  
\*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
- 04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
\*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는 체크 해제
- 05 회사제출  
\*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

**근로자**

▶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
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 필요
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/발급 >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삭제 >
-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>
-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>
-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>
- 소득·세액공제 조회/발급(사업소득자) >

**영수증 발급기관**

병원,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·조회하는 화면

-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제출 >
- 자료제출 현황 조회 >

**자료제공동의 신청** **동의방법**

▶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 
제공자의 공동인증서, 신용카드, 휴대폰, 아이핀 필요

- 본인인증 신청 >
- 미성년자녀 신청 (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) >

▶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

- 온라인신청 (조회자와 제공자 모두 신청 가능) >
- 팩스신청 (신청서, 증명서류 등을 팩스 전송) >
- 세무서방문 신청 (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) >

**자료제공동의 조회·취소**

▶ 제출서류

1. 근로소득자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(첨부자료)

-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.

2. 소득·세액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 항목별 체크 및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 
(기본공제/부녀자/한부모/장애인)

3. 국세청 홈페이지 -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(PDF파일)

- 중도입사자는 월별세부내역 포함하여 출력

※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·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 
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
4. 2020년 중도입사자인 경우,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

5. 그 외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

- 암,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

- 월세 세액공제 관련 서류(임대차계약서, 월세지급내역)

- 자녀,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(교육비납입증명서, 등록금 영수증)

- 보청기,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장구 구매 또는 임차비용

- 안경, 콘택트렌즈 구매비용(현금결제분)

-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액

- 취학 전 아동 학원비

- 종교단체 기부금

- 기타 지정 기부금

※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규로 제공되는 자료

①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

②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구입비

③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

④ 「my홈택스」에서 별도로 제공하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

6.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
7. 세대주 확인을 위해 등본이 필요하며 제출 원하지 않을 경우 2020년 기준 주민등록등본에 소득자의  
세대주 여부 꼭 확인 후 작성

8. 2021년 2월 급여에 연말정산 신고금액 반영

## ◆2020년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

공제구분	공제대상 및 공제금액	제출서류										
(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직계존속</td> <td>직계비속</td> <td>형제·자매</td> <td>위탁아동</td> <td>수급자</td> </tr> <tr> <td>만60세 이상 ( '80.12.31. )</td> <td>만20세 이하 ( '00.1.1. )</td> <td>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</td> <td>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</td> <td>제한없음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소득요건 :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경우 (종합소득금액+퇴직소득금액+양도소득금액 합한 금액을 의미)만 공제대상.</li> </ul>	직계존속	직계비속	형제·자매	위탁아동	수급자	만60세 이상 ( '80.12.31. )	만20세 이하 ( '00.1.1. )	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	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	제한없음	주민등록등본 /가족관계증명서/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/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증명서/가정위탁보호확인서
직계존속	직계비속	형제·자매	위탁아동	수급자								
만60세 이상 ( '80.12.31. )	만20세 이하 ( '00.1.1. )	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	해당과제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	제한없음								
추가공제 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로우대자공제 : 만 70세 이상(1950.12.31. 이전 출생) 1인당 100만원</li> <li>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</li> <li>부녀자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</li> <li>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)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</li> </ul> <p>※ 주의 :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같이 받는다.</p>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										
연금보험료 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</li> </ul>											
보험료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건강보험료·고용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</li> </ul>											
주택자금 공제산식:(㉠×40%)+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, 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, ㉢주택마련저축납입액</li> <li>한도 : ㉠+㉡ = 300만원 ㉢+㉣+㉤ = 1800만원·1500만원·500만원·300만원</li> <li>㉣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</li> <li>*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 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</li> </ul>	다음 페이지 「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」 참조										
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) 개인연금저축(본인명의)액 :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40% (연 72만원 한도)</li> </ul>	저축납입증명서										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</li> <li>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</li> </ul>	공제부금 납입증명서										
주택마련저축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 공제</li> </ul>	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										
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, 직계존·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동거입양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)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, 직불카드, 기명식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(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) - 연령제한은 없음</li> <li>공제금액 : (사용액-총급여액의 25%) X [전통시장, 대중교통:40%(2020.3.1.~7.31. 사용분:80%),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·공연, 박물관, 미술관, :30%(2020.3.1.~3.31. 사용분:60%, 4.1.~7.31. 사용분:80%),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:30%(2020.3.1.~3.31. 사용분:60%, 4.1.~7.31. 사용분:80%), 신용카드 사용분:15%(2020.3.1.~3.31. 사용분:30%, 4.1.~7.31. 사용분:80%)]</li> <li>*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</li> <li>* 공제한도액 : 연간 330만원(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:연간 280만원, 1억2천만원 초과자:연간230만원) 과 총급여액의 20%중 적은 금액 한도추가 : 전통시장(100만원), 대중교통(100만원),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(100만원)</li> </ul>	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										
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 : 240만원)</li> </ul>	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										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삭감액의 50%를 소득공제(연1,000만원 한도)</li> </ul>	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신청서										

공제구분		공제대상 및 공제금액	제출서류														
감면 (청년 90%, 청년외 7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(청년 5년), 150만원 한도 감면</li> <li>대상 : 청년(만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종업종재취업한 경력단절여성)</li> </ul>	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															
외국인 기술자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50% 세액감면 (단, 소재·부품·장비 기술자 : 3년간 70%, 이후 2년간 50%)</li> </ul>																
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 기업기여금 부분(중소기업 50%, 중견기업 30%)</li> </ul>																
자녀세액공제 (손자녀 적용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(30만원 + 2명 초과 1인당 30만원)</li> <li>출생·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</li> <li>* 자녀세액공제 대상 :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</li> </ul>	주민등록등본 / 가족관계증명서															
연금계좌 세액공제 (공제율 12%·1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퇴직연금·연금저축 납입액의 12% 세액공제(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15%)</li> <li>- 50 미만 : 연 7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400만원,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300만원)</li> <li>- 50세 이상 : 연 900만원 한도(연금저축은 600만원, 단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 50세미만과 한도 동일)</li> </ul>	연금납입확인서															
특 별 세 액 공 제	보험료 (공제율 12%·1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대상 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있음)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, 근로제공기간 납입분만 대상</li> <li>공제금액 : (보험료납입액, 100만원 한도) 12% 또는 15%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, 100만원한도)</li> </ul>	보험료 납입증명서														
	의료비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대상 :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(연령, 소득금액 제한 없음)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</li> <li>* 공제대상의료비 : 진찰, 진료,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, 치료·요양을 위한 의약품(한약포함)구입, 보정용 안경, 콘택트렌즈구입(50만원이내), 보청기구입,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, 산후조리원 비용(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,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),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분만 대상 (미용, 성형수술 비용,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)</li> <li>공제금액 : [㉠(본인, 65세이상자,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- ㉡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%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) X 15% (난임시술비는 20%) (㉢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지급액 - 총급여액 X 3%, 700만원 한도) ] X 15%</li> </ul>	의료비영수증등														
	교육비 세액공제 (공제율 15%) (학자금대출상환 액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본인 : 전액(대학원포함)</li> <li>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대학원 제외)</li> <li>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 한도(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)</li> <li>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</li> <li>소득요건은 있으나 연령요건은 없음</li> </ul>	교육비 납입증명서														
	기부금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대상 : 근로자 및 직계존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(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 만), 소득요건 0, 연령요건 X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기부금 종류</th> <th>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</th> <th>세액공제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① 정치자금기부금</td> <td>근로소득금액 × 100%</td> <td>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: 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</td> </tr> <tr> <td>② 법정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</td> <td rowspan="4">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</td> </tr> <tr> <td>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</td> </tr> <tr> <td>④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</td> </tr> <tr> <td>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</td> <td>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법정(지정)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.</p>	기부금 종류	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	① 정치자금기부금	근로소득금액 × 100%	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: 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	② 법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	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	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	④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	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
기부금 종류	소득공제·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세액공제율															
① 정치자금기부금	근로소득금액 × 100%	10만원 이하 : 100/110 10만원 초과 : 15% (3천만원 초과분 25%)															
② 법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) × 100%	법정기부금 + 지정기부금 + 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 (1천만원 초과분 30%)															
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) × 30%																
④ 종교단체 포함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10% + [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의 20%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]																
⑤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	(근로소득금액 - ① - ② - ③) × 30%																
월세액 세액공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제대상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 등을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</li> <li>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</li> <li>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(주거용 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(전입신고가 되었어야 한다.)</li> </ol> </li> <li>공제율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급여 5,500만원 ~ 7천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: 10%(한도75만원)</li> <li>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(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초과자 제외) : 12%(한도90만원)</li> </ol> </li> </ul>	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															

[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]

구분	그 밖의 소득공제	소득공제 (특별소득공제)		세액공제
	주택마련저축납입액	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	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	월세액 세액공제
공제 대상	-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-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청약저축 불입액	-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-국민주택규모주택을 -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의 주택 임차차입금 상환액	-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-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-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권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	-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-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료
기타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받지 않은 경우 ①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(일용근로자 제외)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②세대주 요건외에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갖추고 ③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		
요건	-청약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-청약종합저축 (240만원 이하 납입액) -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축(월 15만원 이하)	<차입금요건> 1)대출기관 차입 시: 입주일, 전입일(갱신 이주 포함)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2) 거주자 차입 시 :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전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.1%이상의 이자율로 대부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	-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금 -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일 것	-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이하자 -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-전입신고
대상 주택	(`09.12.31. 이전 가입자의 경우)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공제가 가능	-국민주택규모 -주거용 오피스텔 포함	-규모요건 삭제(`14년부터) -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하(`19년전 차입금은 기준시가 4억이하) (`13년전 차입금은 국민주택규모+기준시가3억이하) -오피스텔 제외	-국민주택규모 -주거용오피스텔포함 -주거용 고시원 가능 -부양가족명의로의 임차주택 공제가 가능
공제 금액	납입액의 40%	원리금상환액의 40%	이자상환액	월세액의 10(12)%
공제 한도	연간 300만원 한도			75만원 (총급여 5,500만원 이하자 90만원)
증명 서류	-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	-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-주민등록표등본 -(거주자차입 시)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증빙 할 수 있는 서류)	-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-주민등록표등본 -분양가액확인서류(공시가격 알리미)	-주민등록표등본 -임대차계약서 사본 -월세액 지급 증명서류(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영수증 등)
주의 사항	-주택청약종합저축 (무주택확인서를 은행 등에 익년 2월까지 제출)	-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 작성 및 상환 필요 -법인, 각종공제회 차입금 제외	-무허가주택, 농가주택 포함 -사업용, 판매목적 주택 포함 -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유로 봄(상속 제외)	-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